

부산-김해경전철 1종 시설물(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2021.07

부산-김해경전철(주)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1. 평가기준

-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표>에 의한 평가기준
- 나.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2018.11.0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이므로 차후 행정자치부예규 개정 시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
-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2020.6.4.)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라.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585호(2020.5.20.) 「부산광역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85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바. 기준에 의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 2. 일반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 다.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바.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사.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 3. 항목별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교량 및 터널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의 준공된 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 4) 해당 전문분야(교량및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참여기술인의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 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예시)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건수 배점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0	3.5	3.0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 평가점수는 :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임

※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만 인정하고 7.9건 이하는 해당건수 실적을 인정함

5)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 분야 시설물의 정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6)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교량 및 터널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1종, 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실적을 말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은 업체의 참여지분을 적용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라.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마. 입찰참가제한은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며, 업무정지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바.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실적 평가

- 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특허 : 0.6점 / 건당)
- 나) 위 1)의 기술개발 · 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다) 위 1)의 기술개발 · 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마)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투자실적 평가

-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나)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다)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아.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누락 시에는 업무중첩도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 자.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회사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4. 평가 배점기준

### 가. 분야별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1)책임기술인	[4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18)										
	(가)등급	-										
	(나)경력	8										
(다)실적	5	5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준공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5										
	(가)등급	2	- 금액 배점									
	(나)경력	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등급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2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특급</th> <th>고급</th> <th>중급</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 colspan="2">2</td> <td>1.0</td> </tr> </tbody> </table> * 한국기술인협회등록 경력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점수	2		1.0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점수	2		1.0								
(나)경력	6	-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table border="1"> <thead> <tr> <th>7년이상</th> <th>7년미만 ~6년이상</th> <th>6년미만 ~5년이상</th> <th>5년미만 ~4년이상</th> <th>4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4	4.8	4.2	3.6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4	4.8	4.2	3.6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다)실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li> <li>-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준공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li> <li>- 건수 배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11건이상</td> <td>11건미만 ~9건이상</td> <td>9건미만 ~7건이상</td> <td>7건미만 ~5건이상</td> <td colspan="2">5건미만</td> </tr> <tr>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 colspan="2">3.0</td> </tr> </table>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액 배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5억원이상</td> <td>5억미만 ~4.5억이상</td> <td>4.5억원미만 ~4.0억원이상</td> <td>4.0억원미만 ~3.5억원이상</td> <td colspan="2">3.5억원미만</td> </tr> <tr>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 colspan="2">3.0</td> </tr> </table>					5억원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0	4.5	4.0	3.5	3.0		
5억원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0	4.5	4.0	3.5	3.0															
(3)참여기술인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참여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li> <li>○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li> </ul>																	
(가)등급	2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등 급</td> <td>특급/고급</td> <td>중급</td> <td colspan="3">초급</td> </tr> <tr> <td>점수</td> <td>2</td> <td>1.0</td> <td colspan="3">0.5</td> </tr> </table> <p>* 한국기술인협회등록 경력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p>					등 급	특급/고급	중급	초급			점수	2	1.0	0.5			
등 급	특급/고급	중급	초급																
점수	2	1.0	0.5																
(나)경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li> <li>-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 ~3년이상</td> <td>3년미만 ~2년이상</td> <td colspan="2">2년미만</td> </tr> <tr>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 colspan="2">1.8</td> </tr> </table>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다)실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li> <li>-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준공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li> <li>- 건수 배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8건이상</td> <td>8건미만 ~6건이상</td> <td>6건미만 ~4건이상</td> <td>4건미만 ~2건이상</td> <td colspan="2">2건미만</td> </tr> <tr>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 colspan="2">2.4</td> </tr> </table>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	3.6	3.2	2.8	2.4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	3.6	3.2	2.8	2.4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실적	[25]																									
		(12)	- 최근(공고일기준) 5년간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 - 공동도급수행 실적은 참여지분을 적용 (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2)금액	(13)	- 금액 배점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10] (4)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부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첨부1 참조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실적	[10] (2)	<p>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는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li> <li>-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1점 한도)</li> </ul> <p>○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중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건)</td> <td>50이상</td> <td>5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억원)</td> <td>70이상</td> <td>7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5이상</td> <td>5미만 1이상</td> <td>1미만 0.5이상</td> </tr> </tbody> </table> <p>※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p> <p>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p> <p>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2)투자실적	(8)	<p>1)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body> <tr> <td>구분</td> <td>3.0%이상</td> <td>3.0% 미만 ~ 2.5% 이상</td> <td>2.5% 미만 ~ 2.0% 이상</td> <td>2.0% 미만 ~ 1.5% 이상</td> <td>1.5% 미만</td> </tr> <tr> <td>점수</td> <td>8.0</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body> </table>	구분	3.0%이상	3.0% 미만 ~ 2.5% 이상	2.5%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5% 이상	1.5%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구분	3.0%이상	3.0% 미만 ~ 2.5% 이상	2.5%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5% 이상	1.5%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마. 업무중첩도	(1)책임기술인	[10] (6)	<p>-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body> <tr> <td>구분</td> <td>12월미만</td> <td>12월이상 15월미만</td> <td>15월이상 18월미만</td> <td>18월이상 21월미만</td> <td>21월이상</td> </tr> <tr> <td>점수</td>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p>*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p>	구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구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p>-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body> <tr> <td>구분</td> <td>12월미만</td> <td>12월이상 15월미만</td> <td>15월이상 18월미만</td> <td>18월이상 21월미만</td> <td>21월이상</td> </tr> <tr> <td>점수</td>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body> </table> <p>*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p> <p>*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 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p>	구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	4.0	3.6	3.2	2.8	2.4												
구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나.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이상 : 0.1점</li> <li>. 2% 이상 : 0.2점</li> <li>. 3% 이상 : 0.3점</li> </ul> </li> <li>*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li> <li>*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li> <li>*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li> <li>-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li> <li>-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li> </ul>

##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가. 참여기술인 평가(45점)

#### 1) 참여기술인 인원구성

구 분		인원 (명)	비 고
계		5	
사업 책임기술인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계	2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토목 분야①	1	
	토목 분야②	1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계	2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토목 분야①	1	
	토목 분야②	1	

## 2)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 ①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별표5]의 기술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 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②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기술인으로 선정한다.
- 기술인의 배치 :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당해용역 수행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가) 사업책임기술인 평가 : 18점

#### ○ 등급평가

- 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 ※ 토목분야 등급인정 : 한국기술인협회등록 등급 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 ○ 경력평가(8점)

- 기준 :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배 점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예시)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10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년 + 6.9년 = 11.9년으로 8.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4.8점에 해당하는 최대 6.9년까지 인정하고 6.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용역 수행의 준공된 실적(건수, 금액)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건수실적은 참여기술인의 해당 용역 참여기간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
- 배 점(건수)

실 적	14건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임

※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만 인정하고 7.9건 이하는 해당 실적건수를 인정함

- 배 점(금액)

실 적	7억원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10억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억 + 3.9억 = 8.9억으로 5.0점임

※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99억원 인정하고,  
3.99억원 이하는 해당금액을 인정함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 ○ 등급평가(2점)

- 기 준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 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 점

등급	특급	고급
점수	2	1.0

※ 토목분야 등급인정 : 한국기술인협회등록 등급 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 ○ 경력평가(6점)

- 기 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 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 점

구 분 \ 경 력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6	5.4	4.8	4.2

- 예시)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8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년 + 3.9년 = 8.9년으로 6.0점임

※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6점에 해당하는 최대 3.9년 인정하고, 3.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10점)

- 기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배 점(건수)

실 적	11건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건 + 4.9건 = 9.9건으로 4.5점임

- ※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4.9건 인정하고, 4.9건 이하는 해당 실적건수를 인정함

- 배 점(금액)

실 적	5억원이상	5억 미만 4.5억 이상	4.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3.5억 이상	3.5억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8억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억 + 3.49억 = 8.49억으로 5.0점임

- ※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49억원 인정하고 3.49억원 이하는 해당금액을 인정함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자격평가(2점)

- 기준 :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 점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		1.0	0.5

○경력평가(3점)

- 기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배 점

경 력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3	2.7	2.4	2.1	1.8

- 예시) 전문분야 3년, 전문분야 외 8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 3년 + 1.9년 = 4.9년으로 2.7점임

※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1.8점에 해당하는 최대 1.9년 인정하고, 1.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4점)

- 기 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배 점(건수)

실 적	8건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4	3.6	3.2	2.8	2.4

- 예시)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6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건 + 1.9건 = 6.9건으로 3.6점임

※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2.4점에 해당하는 최대 1.9건 인정하고, 1.9건 이하는 해당 실적 건수를 인정함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25점**

1)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량 및 터널분야의 1종, 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 실적으로 한하여 실적건수,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용역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교량 및 터널분야의 1종, 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 건수로 인정하고 실적금액은 교량 및 터널분야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당 금액만 인정한다.



-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 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 표기)
- 4) 증빙서류(실적증명서등)가 미비할 경우 당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배 점

• 실적건수(12점)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12	10.8	9.6	8.4	7.2

• 실적금액(13점)

실 적	10억 이상	10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건수,금액)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10건(금액)×70% + B회사 5건(금액)×30% = 8.5건(금액)으로 10.8점

## 다. 신용도 : 10점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점)

가)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다)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점점·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평가점수 산정시 감점은 각회사 실적(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감점 0.2점×70% + B회사 감점 0.1점×30% = 0.014+0.03= 0.044점 감점

### 3) 재정상태 건실도(3점)

#### ○ 신용평가등급(3.0점)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 <신용평가등급 기준 및 배점>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 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 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3점×70% + B회사 2.4점×30% = 2.1점+0.72점=2.82점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1) 개발실적(2점)

-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시설물안전법 안전·진단용역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1점 한도)

**\* 건설신기술 ·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 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 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 회사 실적(사용실적인 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산출한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등록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사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사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투자실적(8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다만, 회사설립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한다.
-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배 점

비 율	3%이상	3%미만 2.5%이상	2.5%미만 2%이상	2%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비율)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2.5%(비율)×70% + B회사 2.0%(비율)×30% = 2.35%(비율)로 평가점수 6.4점

## 마. 업무중첩도 (10점)

### 1) 책임기술인(6점)

- 책임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배점 “0점” 처리)
-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배 점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 2) 분야별책임기술인 (4점)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배점 “0점” 처리)
-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 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 점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 6. 가점 세부평가방법

###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임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가점 배점

구 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점 수	0.1	0.2	0.3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